

대학원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 정 2019. 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원학칙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본교에서 운영하는 원격수업에 대한 교육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격수업”이란 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수업의 70% 이상을 원격(방송·통신)의 형태로 운영하는 수업을 말하며, 원격수업에는 온라인수업, 원격강의, 가상강의, 전자강의 등의 용어를 포함한다. 다만, 강의실수업의 보조 수단(수업자료 탑재, 질의·응답, 토론 등)으로서 원격을 활용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원격병행수업”이란 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수업의 70% 미만을 원격의 형태로 운영하는 수업을 말한다.

제3조(학점인정) ①제2조1호에서 정한 원격수업 교과목 이수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졸업학점 총 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②제2조2호에서 정한 원격병행수업으로 취득한 학점은 모두 졸업학점으로 인정한다.

제4조(학점당 이수시간) 원격수업의 학점당 이수시간은 매학기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5조(수업일수 및 수업시간) ①원격수업의 수업일수는 매 1·2학기는 15주 이상으로, 여름·겨울학기는 4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과목의 특성에 따라 블록형태(주 또는 일 단위) 등의 집중이수제로 운영할 수 있다.

②1차시의 수업 콘텐츠 진행시간은 최소 25분(1학점 기준) 이상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단, 콘텐츠의 특성에 따라 토론수업 등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25분 미만으로 제작할 수 있다.

③1차시 총 학습시간은 50분 이상이어야 한다.

제6조(시수인정 및 강사료) 원격수업으로 진행하는 시간에 대한 교원의 시수인정 및 강사료 산정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출석관리) 출결처리는 학사운영플랫폼 또는 학습관리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등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제8조(평가관리) ①학생의 성적평가(중간고사, 기말고사 등)는 출석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원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원격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학사운영플랫폼 또는 학습관리시스템 내에서 처리하여야 하며, 평가 시작시간, 종료시간, IP주소 등의 평가근거자료는 4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③원격평가를 실시한 이후 부정행위 및 대리시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응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과목의 학점을 취소한다.

제9조(원격수업관리위원회 구성) ①원격수업 콘텐츠의 품질 관리와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교수학습개발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원격수업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원격수업의 콘텐츠는 제작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경우, 콘텐츠 수정여부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해당 부서 및 교수 등에게 유지·수정·보완·재제작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제2항에서 정한 조치 권고를 받은 부서 및 교수는 위원회에서 정한 기한 내에 해당 콘텐츠를 수정·보완·재제작 등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 방법) ①원격수업에 의한 교과목 운영 및 학점취득 등은 본교 원격강의시스템으로만 운영하여야 하며, 기타 국내외 공공기관 및 사설기관, 업체 등에서 진행하는 원격형식의 수업 등을 통해 이수한 과정은 본교 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원격수업 과목을 운영하고자 하는 학과(전공, 코스)에서는 교무처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에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원격수업 교과목 수는 해당 연도 학기별 각 학과(전공)의 개설된 총 교과목 학점 수의 100분의 2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설할 수 있다. 단, 계약학과는 계약학과 설립·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콘텐츠 개발 및 지원) ①학교는 원격수업을 위한 원활한 콘텐츠 개발 및 제작을 위해 시설, 기자재, 개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1조①항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정한 소정의 기간 내에 절차·방법·기간·과목명·콘텐츠의 종류 등을 명시한 콘텐츠 개발 신청서를 교수학습개발센터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콘텐츠는 문서(PPT, PDF, 아래한글, MS Word 등) 또는 영상(동영상, 플래시 등) 또는 이미지(그림, 사진 등) 등의 방법으로 제작하여 활용할 수 있으나, 원격수업의 원활한 진행 및 관리(출석관리, 평가관리, 품질관리 등)를 고려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④제1항에 의해 개발된 콘텐츠를 본교 원격수업 이외 K-OCW 및 K-MOOC 등에 등재하고자 할 경우, 교수학습개발센터를 경유하여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콘텐츠는 제9조에서 정한 원격수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⑥콘텐츠를 개발·제작하고자 하는 교원은 국내 저작권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원격수업의 관리 및 운영) ①원격수업과 관련한 교과목의 개설 및 성적평가, 학사운영 등의 관리는 대학원에서 주관하며, 기타 사항은 대학원 학사관련 규정에 따른다.

②제1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원격수업을 위한 웹사이트의 관리, 콘텐츠 관리, LMS 온라인 관리, 교수자의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은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주관한다.

제1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학칙 및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의 특례)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